

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(안 제5조).
-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을 수립하고,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7조).
-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 정책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두며, 위원회 심의 안건 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와 사무 지원을 위한 북극항로추진 본부를 설치함(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).
- 해양수산부장관이 북극항로 활용 및 산업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를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위탁·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14조).
- 정부가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,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북극항로 관련 국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

함(안 제15조).

II. 검토의견

1. 위임 규정 정비(안 제2조제3호하목 등)

안 제2조제3호하목, 안 제7조제2항제2호, 안 제13조제1항제4호는 각각 북극항로 연관산업의 예, 북극항로 육성전략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,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. 다만 각 호나 목에서 어떠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.

따라서 제정안이 어떠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는지를 예시를 통해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마련함.

[안 제2조제3호하목 등에 대한 수정의견]

제 정 안	수 정 의 견
제2조(정의) (생 략) 3. (생 략) 하. <u>그 밖에</u>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	제2조(정의) (제정안과 같음) 3. (제정안과 같음) 하. <u>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산업에 준하는 산업으로서</u>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
제7조(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 수립) ② (생 략) 2. <u>그 밖에</u>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제7조(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 수립) ② (제정안과 같음) 2. <u>그 밖에 북극항로 활용 및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</u>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13조(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) ① (생략) 4. <u>그 밖에</u>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제13조(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) ① (제정안과 같음) 4. <u>그 밖에 북극항로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</u>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--	--

그 밖에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최 기 도)